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고 서

2023. 9. 1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I. 건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신복자 의원 외 54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23. 8. 14.

다. 회 부 일 : 2023. 8. 21.

라. 의안번호 : 10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 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되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 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지방자 치법」에는 이를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고자 신설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무부시장·지사를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의 인사청문 대상 중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 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서 '제123조제2항 단 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 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이 송 처 :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시행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3.)되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정무부시장・부지사'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법률1)에 근거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다른 자치단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약 등의 방식을 통해 2011년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 경남, 서울 등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됨.
-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 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최근 국회에서 개정되었음(2023.3.21.).
 -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를 인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당초 개정 법안²⁾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법」³⁾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후보자를 청문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의결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행정 1·2부시장만 청문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됨⁴⁾.

<표-1> 행정부시장·부지사

구 분	서울시	타 시·도
정수	2명	1명 (인구 800만 이상인 경기도는 2명)
신분	정무직 국가공무원	일반직 국가공무원
직급 (상당)	차관급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업무범위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명방법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	

○ 또한.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의 임명 절차는 시장이 제청하면 행정

²⁾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의안번호 11249)

³⁾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 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u>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u>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⁴⁾ 정무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 행정부시장 2명만 해당하고, 다른 광역시·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분이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의회 인사청문 도입 시 대통령이 임명 권을 가진 국가공무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검증 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대상에서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표-2> 정무부시장·부지사

구 분	서울시	타 시·도
정수	1명	
신분	정무직 지방공무원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급 (상당)	차관급	1급
업무범위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명방법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 제2항)	

-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5).

⁵⁾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3 종합 의견

-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인사청문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정무직·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임.
- 당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 ·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이었다는 점에서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함.